

“쿼터는 반토막, 관세는 두 배”

7월 1일 시행, EU 철강 무역조치 어떻게 바뀌나

[이주의 초점]

한국 확보한 무관세 쿼터, 기존 대비 19.7% 감소 (4p)

[한눈에 보는 신규 정책]

수출입·관세 정책,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14p)

[위클리 뉴스]

웨이퍼 고정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으로 분류 “무관세 적용”
신선란 수입 늘리고 계란가공품·닭고기 할당관세 연장
면세품 교환, 이제 국내서 우편·택배로 가능 (8p)

[품목분류 동향]

냉온수기의 품목분류와 복합기계 문제: 돌고 돌아
통칙 제3호 다목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 (35p)

[판례 동향]

할당관세 적용추천 취소에 따라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 부과처분 관련 조세심판결정례 (23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7월 6일(통권 제2185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7월 1일' 더 강해진 EU 철강 무역조치...
한국은 국가별 쿼터 207만톤 확보

08 Weekly News

관세행정실무해설

- 14** 한눈에 보는 신규 정책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 질의응답사례
휴대용 손전등의 수입요건

판례동향

- 23** 조세심판결정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 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품목분류동향

- 35** 품목분류해설
냉온수기의 품목분류와 복합기계 문제
- 42** 세번 바로잡기
'제0306호vs.제0309호' 새우분말의 HS Code
-

'7월 1일' 더 강해진 EU 철강 무역조치... 한국은 국가별 쿼터 207만톤 확보

국가별 쿼터 체계 전면 개편하며 무관세 쿼터 46% 감소, 관세는 50%로 인상

유럽연합(EU)이 8년간 유지해 온 철강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종료하고 7월 1일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를 시행했다. 새 제도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보다 약 46% 축소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가별 쿼터 배분 방식과 조강국(Melt and Pour)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철강 수입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산업통상부는 6월 30일 정부 간 협상을 거쳐 한국이 국가별 전용 쿼터 207만 3,000톤과 FTA 공용쿼터 147만 5,000톤 활용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최대 물량은 354만 8,000톤 수준이다.

국가별 전용 쿼터만 놓고 보면 기존 258만 1,000톤보다 약 19.7% 감소했지만, 정부는 협상을 통해 공용쿼터 활용권을 확보하면서 EU 시장 접근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기존 대비 스위스는 67.5%, 영국은 66% 줄었다. 튀르키예(△28.4%), 인도(△30.2%)도 우리보다 감소 폭이 크다.

EU는 지난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를 도입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는 최대 8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어 6월 30일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 한눈에 보는 한국 협상 성과 ●

구분	내용
국가별 전용 쿼터	207만 3,000톤 확보
기존 국가쿼터 대비	19.7% 감소
FTA 공용쿼터	147만 5,000톤 활용 가능
최대 활용 가능 물량	354만 8,000톤
쿼터 초과 관세	25%→50%(EU 공통 지침)

자료: 산업통상부

EU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배경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을 들 수 있다. KOTRA 김도연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철강 과잉생산 규모는 약 6억톤으로 EU 연간 철강 소비량의 5배를 넘었으며, 2027년에는 7억 2,000만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철강산업은 2018년 이후 생산능력이 3,000만톤 줄었으며 일자리 3만개 이상을 잃었고, 2024년 평균 설비가동률도 67%에 그쳤다.

● 한국의 철강(HS Code 제72·73류) 수출 현황 ●

순위	수출 대상국	2024년		2025년 1~8월	
		수출액(100만달러)	비중(%)	수출액(100만달러)	비중(%)
1	미국	4,831	13.92	2,838	13.13
2	EU	4,687	13.50	2,753	12.74
3	일본	3,862	11.13	2,330	10.78
4	중국	3,424	9.86	1,911	8.84
전 세계		34,717	100.0	21,608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

지난해 미국이 철강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아시아 등 제3국의 철강 물량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EU의 정책 전환 시기를 앞당긴 요인으로 꼽힌다. 6월 30일 로이터통신은 EU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전환(trade diversion)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보다 강력한 수입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관세할당(TRQ) 체계를 도입한 데 있다. EU는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쿼터 초과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한편, 연간 총 1,835만톤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존 세이프가드 물량(3,382만톤)보다 약 46% 줄었으며, 초과 물량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됐다.

또한 최근 3년(2022~2024년) EU 수입시장 평균 점유율이 5% 이상인 품목은 WTO 국가쿼터, FTA 국가쿼터, FTA 공용쿼터가 적용되고, 5% 미만 품목은 FTA 국가쿼터와 WTO·FTA 공용쿼터가 적용된다. 즉 FTA 체결국은 국가 전용 쿼터와 공용쿼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EU 시장점유율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한국 전용 국가쿼터(WTO 국가쿼터·FTA 국가쿼터) 205만 7,000톤과 FTA 공용쿼터 90만 8,000톤을 확보했고, 나머지 16개 품목에서는 FTA 국가쿼터 1만 6,000톤과 공용쿼터(WTO 공용쿼터·FTA 공용쿼터) 56만 7,000톤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가 전용 쿼터뿐 아니라 FTA 공용쿼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 29일 발표한 시행규정에서 국가별 쿼터를 배분할 때 ▲2022~2024년 평균 수입시장 점유율, ▲FTA 체결 여부, ▲공급망 다변화, ▲제3국의 무역왜곡 조치, ▲GATT 제13조상 비차별 원칙, ▲EU 산업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이 확보한 품목별 쿼터 ●

품목	CN Code 및 TARIC Code	한국 쿼터
열연강판(Non Alloy and Other Alloy Hot Rolled Sheets and Strips)	7208.1000, 7208.2500, 7208.2600, 7208.2700, 7208.3600, 7208.3700, 7208.3800, 7208.3900, 7208.4000, 7208.5210, 7208.5299, 7208.5310, 7208.5390, 7208.5400, 7211.1300, 7211.1400, 7211.1900, 7225.1910, 7225.3010, 7225.3030, 7225.3090, 7225.4015, 7225.4090, 7226.1910, 7226.9120, 7226.9191, 7226.9199	46만 1,830톤
냉연강판(Non Alloy and Other Alloy Cold Rolled Sheets)	7209.1500, 7209.1690, 7209.1790, 7209.1891, 7209.2500, 7209.2690, 7209.2790, 7209.2890, 7209.9020, 7209.9080, 7211.2320, 7211.2330, 7211.2380, 7211.2900, 7211.9020, 7211.9080, 7225.5020, 7225.5080, 7226.2000, 7226.9200	25만 4,611톤
금속도금강판(Metallic Coated Sheets)	7212.5020 TARIC Code: 7210.410020, 7210.410030, 7210.490020, 7210.490030, 7210.610020, 7210.610030, 7210.690020, 7210.690030, 7212.300020, 7212.300030, 7212.506120, 7212.506130, 7212.506920, 7212.506930, 7225.920020, 7225.920030, 7225.990011, 7225.990022, 7225.990023, 7225.990041, 7225.990045, 7225.990091, 7225.990092, 7225.990093, 7226.993010, 7226.993030, 7226.997011, 7226.997013, 7226.997091, 7226.997093, 7226.997094	10만 4,480톤
금속도금강판(Metallic Coated Sheets)	7210.2000, 7210.3000, 7210.9080, 7212.2000, 7212.5030, 7212.5040, 7212.5090, 7225.9100, 7226.9910 TARIC Code: 7210.410080, 7210.490080, 7210.610080, 7210.690080, 7212.300080, 7212.506180, 7212.506980, 7225.920080, 7225.990025, 7225.990095, 7226.993090, 7226.997019, 7226.997096	44만 2,795톤
유기도금강판(Organic Coated Sheets)	7210.7080, 7212.4080	16만 7,312톤
후판(Non Alloy and Other Alloy Quarto Plates)	7208.5120, 7208.5191, 7208.5198, 7208.5291, 7208.9020, 7208.9080, 7210.9030, 7225.4012, 7225.4040, 7225.4060	31만 9,670톤
전체		약 207만 3,000톤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자료: EU 집행위원회)

■ 조강국 기준 도입으로 원산지 관리 중요성 커져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조강국(Melt and Pour) 기준 도입이다. 조강국은 철강이 최초로 용해·주조된 국가를 의미한다. KOTRA 김도연 브뤼셀무역관은 “앞으로는 단순히 최종 가공국이 아니라 철강이 실제 생산된 국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게 된다. 이는 중국산 철강이 제3국에서 가공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수입자는 제철소시험성적서(MTC, Mill Test Certificate) 등 조강국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EU는 오는 8월 31일까지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증빙 제출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10월 1일부터는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도 조강국 정보를 반영하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조강국을 공식적인 쿼터 배분 기준으로 활용할지 평가할 예정이다. 이는 앞으로 철강 수출 경쟁력이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공급망의 투명성과 원산지 관리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EU는 이번 규정을 시작으로 규제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무역관에 따르면 우선 2026년 말까지 와이어, 스테인리스 와이어, 단조봉, 주철관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2027년까지는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하류제품(Downstream products)에도 규제를 확대할 필요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김 무역관은 스테인리스 와이어와 와이어가 한국의 EU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인 만큼 향후 제도 개편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EU의 스테인리스 와이어 수입시장에서 2위(15.2%), 와이어 시장에서는 4위(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EU 철강 무역조치는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반영한 새로운 통상체제로 평가된다. 국내 철강업계에는 쿼터 활용과 함께 공급망 관리 및 원산지 증빙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쿼터 감축폭이 다른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EU 철강 수출 여건과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봤다. 7월 1일 철강업계와의 간담회에서 “EU 시장 규제 강화가 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정보 제출 제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로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 고정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으로 분류... 무관세 적용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최종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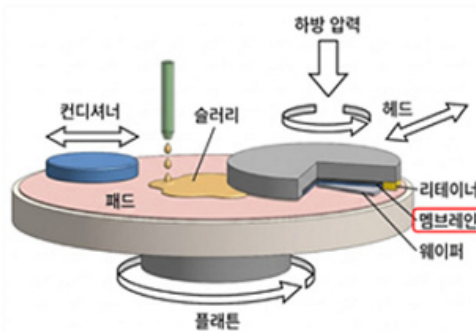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에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총 11건의 품목분류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

멤브레인은 반도체 제조용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 중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도록 돕는 필수 부품이다.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3926.90-9000호의 플라스틱 제품(WTO 양허관세 6.5%)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었으나, 관세청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090호, 기본 0%)으로 결정했다.

● 정점물품 멤브레인 & CMP 공정 ●



출처: 관세청



이와 함께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가 없는 바지가 소년용 긴바지(제6103.49-0000호, 한·중 FTA 2.6%)와 소녀용 긴바지(제6104.69-0000호, 한·중 FTA 1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심사했다. 위원회는 여밈 방향이나 디자인으로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도록 정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규정(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을 적용해, 해당 물품을 소녀용 바지로 최종 결정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의류의 품목분류가 단순한 외관이 아닌, 규정에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서준식 기자 |

● 2026년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WASHER DISINFECTOR	제8419.20-0000호(WTO 양허 0%)
2	질소 발생기	제8421.39-9099호(국제협력관세 5%)
3	와이드 긴바지	제6104.69-0000호(한·중 FTA 13%)
4	창꿀뚜기	제0307.43-2010호(한·베트남 21.6%)
5	MEMBRANE	제8486.90-2090호(기본 0%)
6	MATCHA FLAVOR	제2101.20-9090호(기본 40%)
7	GREEN TEA FLAVOR	제2101.20-9090호(기본 40%)
8	OCTARAY Mapping Catheter	제9018.90-9000호(WTO 양허 0%)
9	피크닉매트	제6307.90-9000호(기본 10%)
10	BAR	제8431.10-0000호(WTO 양허 0%)
11	SILICONE BRA	제3926.20-0000호(한·중 FTA 0%)

농식품부, 신선란 수입 늘리고 계란가공품·닭고기 할당관세 연장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과 닭고기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계란가공품과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등 공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2일 계란·닭고기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1일 열린 제2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과 태국 등에서 신선란 2,100만개를 7월까지 수입하는 데 이어 2억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된 신선란은 대형마트는 물론 계란산업협회와 제과협회 등을 통해 중소 유통업체와 제과·제빵업체에도 공급된다.

계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확대된다. 정부는 액란 등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상반기 4,000톤에서 연말까지 8,000톤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계란가공품을 포함한 식품원료 10개 품목 등 총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한 수입도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성수기 공급 안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벨기에와 스페인 등에서 부화용 육용종란 1,700만개를 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육가공업체와 외식업체의 자사제조용 수입 닭고기 3만톤에 대해 7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대상 품목은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날개 등 8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확대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관과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불법수입 생과실 국내 유통도 처벌... 「식물방역법」 12월 시행

불법으로 수입된 생과실과 묘목, 곤충 등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앞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제우편이나 해외 직구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들여올 때는 우편물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 1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우편·탁송·휴대 반입 과정에서 폐기된 불법반입 식물류는 2021년 3만 6,000건에서 2025년 15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수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 불법 유통돼 적발된 수입금지 생과실 & 과채종자류 ●



(좌) 람부탄, (우) 오이·가지 등 과채종자류(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정안에는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 등을 국내에서 양도하거나 유통(유통 목적의 보관·운반 포함)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불법 수입식물류를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국제우편이나 탁송으로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탁송품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품명 허위 기재 및 미기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누락 없이 검역을 거쳐 통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 “우회덤핑 차단·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6월 30일 ‘무역위·관세청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공정 덤핑수입 차단과 무역구제 제도 운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반덤핑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체결한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 채널로 이번에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감시와 가격약속 제도의 시행 효과 분석이 주로 논의됐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관세청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반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가격약속은 해외 수출업체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며 최저 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조정, 이행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속하는 WTO상 무역구제 제도다. 약속을 위반할 경우 해당 수입물량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해당 업체는 가격약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가격약속 효과 분석에 필요한 관세청 수입통계와 과세정보 공유 방안도 협의했다.

관세청은 덤핑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올해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운영 계획도 공유했다. 아울러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덤핑제도 개선 방안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하고, 철강제품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해 무역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 협력을 지속해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FTA 피해보전직불금 올해는 염소고기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6월 26일 발표했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한 후 생산자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FTA 직불금의 지급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업e지(www.nongupez.go.kr)'로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서준식 기자 |

재출국 해야 했던 면세품 교환, 이제 국내서 우편·택배로 가능

관세청이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교환된 물품은 다음 출국 시 공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교환 물품도 시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의 색상·크기 변경 제품으로 한정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과 같이 입국 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다. 세부적인 교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면세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에는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앞으로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K-뷰티, K-식품 등 국산 제품의 구매 편의가 높아지고, 중소기업도 면세점 매장 입점 부담 없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성은 기자 |

□ Q&A 면세품 교환, 무엇이 달라지나?

Q.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교환품도 재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받을 수 있다.

Q. 해당 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Q.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한 물품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세관의 휴대품검사로 적발·과세된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된다.

Q. 모든 면세품을 교환할 수 있나?

A. 아니다.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의 색상·사이즈 변경만 허용된다.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물론, 가격 관계 없이 동일 물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Q. 면세품 구입 후 교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교환 가능 기간은 면세점별 교환·환불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한 면세점의 정책을 별도 문의할 것을 권한다.

Q. 주류·담배·향수도 이번 개정된 절차가 적용되나?

A. 별도 면세범위 물품도 기본적인 교환 절차는 동일하다. 다만 파손 우려로 택배·우편 교환이 어려운 물품은 면세점 고객센터와 상의해 교환방법에 관해 협의하기 바란다.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 “악의적 상표 선점도 과태료 대상”

중국이 악의적 상표 선점과 비사용 목적의 대량 출원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을 전면 개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중국의 「상표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기 위한 출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한다. 타인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는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위안, 한화 약 2,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효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도 등록 거절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개정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5만 위안(한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 광고·표시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됐는데,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해 악의적 출원 조력이나 대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 또는 악의적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 매출·광고·유통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성은 기자 |

한눈에 보는 신규 정책

정부는 6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정책 245건을 공개한 가운데 주간 관세무역정보는 그중 수출입 및 관세 관련 변화만 선별해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및 인포그래픽: 주간 관세무역정보)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는 6월 30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

신청기한 도과로 인한 손해누락을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없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현행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신청 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서비스 접근성 격차 존재
주요내용 | 재난 피해·디지털 취약 화주를 위한 신청기한 연장 및 오프라인 신청 허용 기대효과 |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 및 서류제출의 편의성 향상
시 행 일 | 2026년 7월 1일

"급박한 사정으로 신청기한 준수가 곤란한 화주 및 디지털 미숙련 화주가 대상.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예외적인 기한 특례 제공, 전자적 신청이 어려운 화주는 E-mail, 팩스 등 수기 접수도 가능"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신청 기한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팩스)	고령자 등 전산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 가능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추진배경 | 신속·간편한 증명서 발급으로 수출기업 편의 제고 및 세관 발급 업무 (연 30만건 이상) 간소화 필요
주요내용 |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신청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
기대효과 |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
시 행 일 | 2026년 7월 1일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 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는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증명서 발급 절차	① 세관장 발급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① 세관장 발급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 발급 ②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44

수입 위생용품 전자심사를 통한 신속통관 가능

위생용품 수입신고, 전자심사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추진배경 |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수입 위생용품 검사 업무의 신속 처리 필요

주요내용 | (적용대상) 수입 위생용품 중 구강관리용품 등 12개 품목

※ 구강관리용품,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행균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일회용행주·타월·종이냅킨·면봉·팬티라이너, 마른티슈 (운영방식) 규칙기반 AI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하여 서류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기대효과 | 기존 서류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영업자 규제부담(보관비, 통관 시간)완화 지원으로 수입신고 신속 통관 행정서비스 구현

시행일 | 2026년 7월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검사방법	검사관이 검사	자동화된 시스템*이 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동 신고수리 * (수입안전 전자심사24) -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심사하는 시스템 **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검사관이 검사
처리기간	서류검사 최대 2일 소요	서류검사 시간 단축(5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044-202-4957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인가 면제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가 면제됩니다.

추진배경 | 수출용 장치는 국내에 전파 혼신을 줄 가능성이 없으나, 전파법상 내수용 장치와 동일한 인가 대상으로 기업에 부담

주요내용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수출 목적 증빙 시 인가 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K-방산 수출 활성화에 기여

시행일 | 2026년 7월

"전파차단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방산업계 종사자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에 대해 인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과기정통부 전파차단장치 제조인가	○	X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검색 창구 통합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가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있어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움
 주요내용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 및 '국가 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연계 기대효과 | 수출기업의 해외법령·규제 정보 접근성 제고
 시 행 일 | 2026년 12월

"글로벌 식품법령 기준규격 시스템 및 국가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등에서 제공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해외 법령정보 검색	여러 플랫폼을 일일이 탐색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원스톱 검색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이 아닌 수리용 부품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해집니다.

추진배경 |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선사 스케줄 등을 사유로 적재 의뢰받은 수리용 부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 외 보관이 적합한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음
 주요내용 | 선사가 직접 수입·소유하며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품은 자가화물이 아니지만, 선박용품 공급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기대효과 | 선박용품 공급업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급업 활성화 기대
 시 행 일 | 2026년 7월 1일

"자가용 보세창고는 자기 화물만 반입 가능하나,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에 한해 타인 소유 화물이더라도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대상	자가화물	자가화물 +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 및 부속품

해양수산물 수산물안전정책과
051-773-5414

냉동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지정

국민식탁에 자주오르는 대중성 어종 5개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추가하여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추진배경 |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대중성 어종(냉동 고등어, 냉동 오징어 등)이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주요내용 | (정책대상)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이해관계인) 수입수산물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기대효과 | 수입산 대중성 어종의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및 공정거래 유도

시행일 | 2026년 6월 29일

"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는 양도후 5일 이내 유통이력(양수업체, 거래량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정 품목	별장어, 냉동조기 등 22개 품목	냉동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5개 품목 추가
지정 기한	2023.8.28 ~ 2026.7.31	2026.6.29~2029.4.30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방산물자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연장

방산물자 수출허가 면제 후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추진배경 | 현행법상 수출허가를 면제받아 방산물자를 수출한 업체는 7일 내 수출거래 현황 제출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워* 개정 필요성 제기
* 수출대상국 서류발급 행정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자료 제출 지연 발생

주요내용 |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

기대효과 | 방산물자 수출업체의 업무 부담 경감

시행일 | 2026년 하반기(방위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해 방산물자 수출업체의 서류 준비 시간 확보 등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수출거래현황 제출기한	7일 이내	20일 이내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52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으로 위해물품은 철저히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강화합니다.

추진배경 | 급증하는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통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

주요내용 | ❶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주문·결제 등) 사전입수
 ❷ 전자상거래 전용신고서 신설,
 ❸ 전자상거래 공급망 정보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❹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
 ❺ 전자상거래 전용 웹 구축

기대효과 |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법행위 차단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환경 조성

시행일 | 2026년 8월 15일(오픈 예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위험관리	과거 적발 이력으로 선별	사전거래정보 입수를 통한 선제적 차단
신고 체계	기존 B2B기반 일반 신고서 사용	B2C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고정된 부호 반복 사용	일회용 부호 및 인증번호 도입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수입요건 / 휴대용 손전등의 수입요건

**리튬이온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용 손전등을
수입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알려주세요.**

제8513.10-2010호에 분류되는 발광다이오드(LED) 휴대용 손전등을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손전등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FTA / 미조립 기계 수입신고·FTA 적용 여부

**수입물품이 완성품이 아닌 여러 부품으로 나눠 배송됩니다.
이때 완성품의 세번 및 가격으로 수입신고와 FTA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등을 이유로 미조립 또는 분해돼 제시되는 물품도 완성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의 범위를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되지 않으나,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더 이상의 작업(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를 들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해 조립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예정 물품이 통칙 제2호 가목에 적용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완제품 세번으로 수입신고 및 FTA 적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칙을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부품들도 별도의 세번으로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각 부품별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 FTA 적용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화물 / 해외 체류 중 사용하던 자동차 통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구매한 한국산 자동차를 귀국 시 한국에 반입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도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나요?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입니다.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단,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과 ‘필수 과세대상물품’은 세금 부과).

□ 이사자 기준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할 자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 그 밖의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필수 과세 대상 물품

- 선박, 항공기
-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차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제3항 제1호를 참조하면 자동차는 필수 과세대상으로 이사화물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사화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자기인증, 환경인증 등이 면제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로인 입국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한 자동차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및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동차는 필수 과세대상으로 이사물품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조돼 수출된 국산자동차(차대번호 'K'로 시작)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의 경우 필수 과세대상물품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 해외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반입하는 차량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차대번호(VIN) 등 기재]를 하고 반출되는 자동차라면 이사물품으로 수입 시 해당 수출신고필증으로 증빙해 면세 통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우측 상단의 주요서비스 중 해외 이사물품 항목에서 이사자 판정, 이사물품 통관절차, 자동차 통관절차 및 예상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관예약 및 자동차 등록절차 탭에 자동차 배기량, 최초 등록일 등 관련 정보를 기입하면 예상세액 등 자동차 등록 전체 예상 비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 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번호: 조심2024관0097(2024.11.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8.17.부터 2022.9.22.까지 멕시코 소재 A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등 2건으로 냉동 돼지고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이하 '한국육가공협회'라 한다)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하 '쟁점추천'이라 하고, 그 추천서를 '쟁점추천서'라 한다)을 받은 후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국육가공협회는 청구법인이 2022.6.24.부터 2022.7.27.까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던 냉동 돼지고기 중 일부(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2.8.9.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 업체임에도, 그 이후에 수입되는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쟁점추천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쟁점추천을 취소한 후, 2023.3.13.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25%)을 적용하여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4.4.2.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행수입물품이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체판매되었으므로 쟁점추천의 취소는 위법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처분도 위법하다.

(가) 이체판매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은 2022.6.2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2-24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농식품부추천요령’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육가공협회를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6.22.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1호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이하 ‘쟁점세부추천요령’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물품은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입처에 이체판매(「민법」 제190조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할 경우도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한국육가공협회는 청구법인에게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여부와 관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전량 내수판매업체에게 이체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선행수입물품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은 선행수입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인 내수판매업체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내수판매업체는 자신의 판매 상황에 따라 판매하는 물량만큼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매입처에 배송하므로 선행수입물품이 한 번에 반출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데, 선행수입물품 중 일부가 추천일로부터 45일을 경과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 매수인이 선행수입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쟁점세부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한국육가공협회는 이체판매는 이미 판매를 완료한 것으로 보세구역에서의 반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계속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후 전량 이체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받은 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 돼지고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돼지고기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시세차익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판매되지 아니하고, 일반창고에서 계속 보관되어 유통되지 않는다면 물가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물가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규모가 큰 수입업체나 도매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보세창고에서 일반창고로 반출된 후 중간 유통 단계가 존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체판매는 비교적 소규모 도매업체에 판매된 후 바로 식당이나 정육점 등 소매업체에 판매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다.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모두 (이체)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부추천요령상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세부추천요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쟁점세부추천요령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처분도 위법하다.

위임명령은 수권되지 않은 입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규정을 할 수 없고, 규정의 내용도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관세법령에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농식품부추천요령」 제9조에서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상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훈시적·권고적 규정만 있으며, 보세구역에서의 반출과 관련하여 한국육가공협회장에게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는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추천받은 물품을 반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추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세부추천요령은 무효다.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이나 쟁점세부추천요령의 상위 법령인 「농식품부추천요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무효인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에서는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하여 경정 및 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이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34417 판결).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서 취소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나 추천의 취소는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4.4. 선고 2023누56851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세관장은 할당관세에 관한 추천기관의 추천이 있더라도 할당관세 적용 배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요건을 갖추어 통관·유통된 물품에 대하여 그 추천의 취소를 강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을 추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추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세관장이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이상 그 추천을 취소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한 추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모두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령 및 쟁점세부추천요령에 반한다.

처분청은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서의 취소를 쟁점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위반한 청구법인에 대해 2022.10.7.부터 2022.12.31.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배제하여 쟁점세부추천요령에 맞게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는데, 처분청이 쟁점세부추천요령 위반을 이유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을 경과하여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음에 있어 그 어떠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육가공협회를 기망한 바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 선행수입물품을 이체판매하였으나 매수인이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므로 한국육가공협회는 선행수입물품이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미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추천서를 발급해 주었다.

추천일(또는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추천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한 규정은 쟁점세부추천요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관리할 권한은 한국육가공협회에게 있는데, 한국육가공협회는 이체판매를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거나 할당관세 추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해 주었는바, 추후 처분청이나 농식품부장관이 한국육가공협회장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여 쟁점추천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2022년도 1차 추천받은 물량 중 대부분의 추천물량이 일반창고의 여유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45일이 지나서야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2차 추천을 받지 않아 추천 배제할 물량이 없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2차로 추천을 받은 소수의 영세업체들만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22년 당시 코로나19 등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전례 없이 한꺼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이들 품목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일반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가공해서 시장에 납품할 육가공업체들도 일감이 밀려 바로 가공해 줄 수 없었다.

여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수입량이 폭증하고 일감이 밀리는 병목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육이 소비자에게 바로 흘러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4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의무를 규정한 것 자체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정부당국)의 판단 착오이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행수입물품을 45일 이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은 청구법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2)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육가공협회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공적 견해표명 또는 공적인 선행 조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을 함에 있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육가공협회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게 선행수입물품을 이체판매한 사실과 매수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밝혔고, 한국육가공협회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추천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추천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이 유효함을 신뢰하고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을 전량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매수인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쟁점물품 전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부추천요령은 적법하고, 쟁점추천서의 취소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세부추천요령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 및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돼지고기가 할당관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고, 그 할당관세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및 「농식품부추천요령」에 따라 추천기관이 세부 추천요령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하였다.

「농식품부추천요령」 제8조에서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천요령을 제정·공고·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육가공협회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쟁점세부추천요령의 승인을 요청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따라서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세부추천요령에 수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규정을 하였고, 규정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2022.6.14.)로부터 84일이 지난 2022.9.16.에야 보세구역에서 반출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에 대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22.8.9.부터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8.17.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명백히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쟁점추천서의 신청·발급 및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22.8.9.부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추천서는 명백히 하자 있는 추천서이고,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추천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은 수입통관 당시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였을 뿐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서 발급 등의 진위 여부까지 판단한 바 없고, 납세신고수리(또는 수입신고수리)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가 신고한 내용의 적법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애당초 하자 있는 쟁점추천서를 통해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원인 없이 부당하게 관세감면(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부족세액을 징수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법원에서는 추천기관의 세부 추천요령에 규정된 의무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된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및 2008.5.29. 선고 2007도4952 판결 등, 같은 뜻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의무불이행의 기산점인 2022.8.9.부터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 업체로서 이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납세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었더라도 처분청은 사후에 그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 이체판매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0% 세율이 적용된 돼지고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자가 보세구역 반출 의무 이행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시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언급한 이체판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그대로 둔 채 매수인에게 소유권만 이전하는 거래형태로, 상황에 따라 1차, 2차, 3차 ... N차까지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물품 반출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기 시장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중국에는 할당관세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 및 처분청은 이체판매를 쟁점세부추천요령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위 요령상 추천 배제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은 2023.5.3. 농식품부에 한국육가공협회 등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 취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농식품부는 2023.5.10. 민원 제기업체들에게 “할당관세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의 세수를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수입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바, 할당관세 시행 목적과 달리 업체가 수입 돼지고기를 시중에 빠르게 공급하지 않고 45일 이상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할당관세의 효과를 무력화시켰다면 규정대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해당 규정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해당 조치를 통해 할당관세 시행 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의 공고를 신뢰함에 따라 예상되는 물가안정 등 공익이 수입업체의 사익보다 크므로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는 「행정기본법」 제10조와 제18조를 준수한 유효한 처분”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한국육가공협회 등 추천기관은 2022.10.21.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한 후, 잘못 발급된 추천서를 2차례에 걸쳐 취소하였고, 2023.3.13. 처분청에 최종 취소한 내역을 통보하였다.

(2) 위법하게 발급된 추천서에 대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은 성립될 수 없다.

쟁점추천서 발행 당시, 농식품부나 추천기관은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 이후에 발급되는 추천서가 유효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 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배제될 것을 쟁점세부추천요령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쟁점세부추천요령 별지 제2-1호 서식에 ‘보세구역 반출 예상일’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쟁점추천서를 통해서도 선행수입물품의 예상반출일을 알 수 있었으므로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 이후에 발행된 쟁점추천서에 대한 신뢰이익은 자신의 의무 해태와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한국육가공협회 할당관세 추천 담당자 간 전화통화(녹취록)는 농식품부나 추천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추천서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이 공익, 즉 신속한 물품반입을 통한 국내 물가안정이라는 제도적 취지 및 성실 의무 이행자들 간의 형평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서 취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부추천요령 제10조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

서 추천물품을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자는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때에는 한국육가공협회에 별지 제2-1호 서식(할당관세 적용 추천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2-1호 서식에는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서식 하단에는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12.30. 공고 제2022-8호로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된 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추천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업체 등의 특수하거나 ‘이체판매 등 관행적인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40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2.6.24.부터 2022.7.27.까지 총 12건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한 후, 내수판매업체에게 전량 이체판매하였는데, 이 중 8건의 선행수입물품은 보세구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22.8.19. 이후 한국육가공협회에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후 내수판매업체에게 전량 이체판매하였고, 쟁점물품은 모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돼지고기가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보세구역 미반출 이후 추천서의 효력 유무 및 소급 취하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농식품부는 2022.10.21. 처분청 및 한국육가공협회 등 각 추천기관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미반출된 이후에 발급된 추천서는 발급되지 않았어야 할 추천서가 발급된 것으로서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을 통보(축산경영과-5637호)하였다.

(바)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12.15. 청구법인에게 2022.12.23.자로 쟁점추천서를 취소할 예정임과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반출 위반에 따른

추천서 취소 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육가협 제2022-99호)을 발송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2.12.15. 한국육가공협회에 선행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육가공협회에 문의하여 전량 이체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은 반출기한 내에 모두 반출하였으므로, 선행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줄 것과 쟁점추천서를 취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12.23. 청구법인에게 2022.12.23.자로 쟁점추천서를 취소한다고 통지(육가협 제2022-102호)하였다.

(아) 한국육가공협회는 2023.3.13. 관세청장에게 2022.12.23.자로 쟁점추천서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육가협 제2023-33호)하였고, 처분청은 2023.4.6. 청구법인에게 2023.4.18.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추천서 취소에 따른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4.4.2. 쟁점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를 상대로 할당관세 추천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및 추천의 취소는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4.4. 선고 2023누56851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이체판매도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해당하므로 선행수입물품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추천의 취소가 위법하므로 쟁점처분도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관세법」 제71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식품부추천요령」에 따라 한국육가공협회가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는 「농식품부추천요령」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한 점,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로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은 점,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추천서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취소한 점,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처분청으로서의 쟁점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서 발급 이전에 한국육가공협회와 통화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추천서를 신뢰한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한국육가공협회에 문의하였다거나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추천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냉온수기의 품목분류와 복합기계 문제 - 돌고 돌아 통칙 제3호 다목으로 다시 돌아온 이야기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한국인의 물 사랑은 각별하다. 환경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수돗물을 “생으로 직접 마신다”는 응답은 약 5~7%에 불과하며, 끓여 마시는 비율을 합쳐도 전체 음용률은 36% 내외에 그친다고 한다. 대부분은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마신다는 뜻이다.

아리수 등 국내 정수장 검사 항목(약 350개)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도 훨씬 까다롭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 배관, 저수조 위생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돗물을 기피하고 더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 기꺼이 추가비용을 지불한다.

아이돌 스타와 미남미녀 배우들이 정수기 광고에 등장하고 사무실에 탕비실은 없어도 정수기는 있어야 하는 시대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수기는 단순히 물을 걸러주는 필터를 넘어 열음, 탄산수 등 사용자 맞춤형 식수를 제공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출처: AI 생성 이미지

이번 호에서는 정수기(또는 냉온수 공급기)의 품목분류 사례와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제16부 주 제3호(복합기계와 다기능 기계)

복합기계나 다기능 기계의 품목분류 원칙을 제공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 (principal function)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제16부 주 제3호의 규정에서 키워드는 주된 기능(principal function)이라 할 수 있지만, 주기능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HS legal text나 해설서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 제16부 해설서

총설

(VI)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 <중략> ...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 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 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복합기계나 다기능 기계가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능 중 어떤 것을 주기능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예를 들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해설서에서 복합물품의 구성요소 중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예시하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복합기계의 주기능이 무엇인지는 시장의 상식에 기반해 판단하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필자가 통상 품목분류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교육과정에서 제16부 주 제3호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가 있다.

세탁기능(제8450호)과 건조기능(제8451호)을 동시에 갖춘 기기의 주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물의 냉각(제8418호)과 가열(제8516호), 그리고 청정(제8421호) 기능을 갖춘 냉온정수기의 주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휴대전화, 카메라, 게임기 등의 기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의 주기능은 무엇인가?

● 건조 기능 세탁기 & 냉온정수기 & 스마트폰 ●



위 사례들은 복합기계의 예시로서 일견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이들 중에는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하기 부적합한 물품이 있다.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래의 제8450호의 용어다.

84.50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즉, 제8450호는 호의 용어부터 이미 건조기능이 있는 세탁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탁기를 품목분류함에 있어 주기능이 세탁(제8450호)인지 건조(제8451호)인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시 말해 제16부 주 제3호까지 검토할 필요도 없이 제8450호의 용어만으로 품목분류가 끝날 수 있다.

스마트폰도 이와 유사하다. 200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에서 초창기 스마트폰에 대해 제16부 주 제3호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8525호에,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8528호에 각각 분류했던 사례가 있다.

● TV 수신이 가능한 DMB 폰 ●



시장의 상식으로는 휴대전화를 복합기계로 본 것도, 휴대전화의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전화기(제8517호)가 아닌 디지털카메라나 TV 수신기로 분류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겠으나 EU에서는 한동안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고, 이는 국제적인 품목분류 분쟁으로 이어져 WCO HS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했다.

오랜 논의를 거쳐 디지털카메라나 GPS 기능, TV 수신기능 등을 적용한 휴대전화는 제8517호의 전화기로 분류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쟁점이 정리됐고,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든 이후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는 스마트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제85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5.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계의 기능(예: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한다(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스마트폰은 제85류 주의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이외의 다른 기능을 장착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굳이 복합기계로서 그 주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호의 용어와 관련 주에 의해 품목분류가 끝날 수 있다.

2. 냉온수기의 품목분류와 주기능 판단의 문제

이에 반해 냉온정수기는 명백한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 기계로 볼 수 있다. 관세율표상 그 어느 호에서 호의 용어나 맥락상 물의 냉각, 가열, 청정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호는 없기 때문이다.

냉온정수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의 청정기능을 주기능으로 봐 제8421호에 분류하고 있다¹⁾. 냉온정수기의 경우 시장에서는 대체로 정수기라는 품명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물의 냉각과 가열은 정수기의 사양과 등급에 따라 채택하는 보조적인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수기능이 없이 물의 냉각과 가열 두 가지 기능만 가능한 냉온수기의 경우 물의 냉각과 가열 중 어느 쪽을 주기능으로 볼 것인가?

● 냉온수기 ●



기능이나 사용 목적 측면에서 냉각이나 가열 중 어느 하나가 주기능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여름엔 냉각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겨울에는 그 반대일 것이다.

2000년 6월, 관세평가분류원은 냉온수기에 대해 주기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분류 가능한 호(제8418호와 제8516호) 중 순서상 최종 호인 제8516호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07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냉온수기의 품목분류, 정확하게는 주기능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냉온수기의 SKD(Semi Knock Down)의 품목분류를 검토하면서 냉온수기의 주기능을 판단할 때 냉온수기를 구성하는 냉각시스템과 가열시스템의 가격 비중을 참고했다.

1) 관세평가분류원 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3860(2023.6.27.) 등 참조

냉온수기에서 냉각과 가열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품, 예를 들면 기기의 프레임이나 하우징, 물이 나오는 탭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냉각모듈과 가열모듈의 비중만 검토할 때 냉각과 가열의 구성비가 약 8 대 2 정도인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가열유닛의 경우 물탱크 외부에 감겨 있거나 내부에 장착된 시즈 히터(Sheath Heater)나 밴드 히터 등의 열선, 그리고 온도를 제어하는 단순한 바이메탈(센서)이 전부이므로 구성이 단조롭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다. 반면, 냉각유닛은 소형 냉장고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냉매를 적극적으로 순환시키고 이 순환 사이클을 통해 저온을 만들어야 하므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모터, 모세관 등 고가의 정밀 기계 부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가격이 비싼 것은 물론, 동작 원리도 훨씬 복잡하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위원회는 냉온수기의 주기능을 냉각기능으로 판단하고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해 제8418호로 분류했다.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정수기능 없이 단순한 물의 가열과 냉각만 가능한 냉온수기를 제8418호로 일관되게 분류해 오고 있다.

3. Water Dispenser의 품목분류(feat. WCO HS위원회)

제77차 HS위원회(2026년 3월)에서는 우간다의 요청에 따라 냉수와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Water Dispenser의 품목분류를 검토했다. 이 물품에는 정수기능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식수 공급 시스템(tap)
- 500W 가열장치
- 압축 냉각 방식(85W 컴프레서)
- 온수공급 온도 90~95°C(온수탱크 용량 1.1리터)
- 냉수공급 온도 5~10°C(냉수탱크 용량 3리터)
- 물넘침 방지용 트레이와 덮개
- 전원 공급부와 지시등

HS위원회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우리나라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의 논리에 따라 압축기 등 냉각기능을 위한 구성부품이 가열을 위한 구성부품에 비해 더 중요하므로 냉각을 주기능으로 봐 제8418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냉수탱크의 용량이 온수탱크의 용량보다 크다는 점을 근거로 역시 냉각이 주기능임을 주장했다. 그 밖에도 몇몇 나라들이 유사한 접근에 따라 제16부 주 제3호 또는 통칙 제3호 나목을 근거로 제841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캐나다, EU, 미국, 중국 등은 이 물품의 주기능을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따라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검토 가능한 두 개 호 중에서 순서상 마지막 호인 제8516호에 분류된

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투표 결과 더 많은 국가가 제8516호를 지지함에 따라 HS위원회는 이 물품을 제8516.79호로 분류결정했다.

4. 남은 쟁점과 향후 문제

HS위원회의 분류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유보나 재검토 요청 등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 결정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WCO의 공식 입장으로 권고되고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에도 등재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관행상 관세청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결정을 수용함과 동시에 2007년 위원회 결정의 변경 필요성까지 검토할 것이다.

문제는 위 HS위원회 결정이 “모든 종류의 Water Dispenser에 적용될 수 있는가”다.

HS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은 정수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냉온수 공급기다. 위원회 참석국가의 대체적인 견해는 물의 냉각과 가열 중 어느 쪽이 주기능인지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해 최종 호에 분류하자는 것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필수 가전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냉온수 공급기능이 있는) 정수기의 경우 이 결정을 쉽게 준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냉온정수기에서 “물의 냉각이나 가열이나 정수나 그 어떤 것도 주기능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인 입장에서 정수기는 찬물 더운물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식수를 위해 구매하는 물품이다. 냉온정수기의 경우 정수기능을 주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데에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수기능이 없는 냉온수 공급기라 하더라도 그 사양에 따라 단순한 냉수 정도를 넘어서 얼음까지 얼려주는 기능이 있는 것이라면 보통의 냉온수기에 비해 훨씬 더 출력이 큰 컴프레서를 장착해야 한다. 이 경우 가열유닛과 냉각유닛의 비중 차이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즉, 가열유닛의 비중이 점점 더 작아지는 상황에서도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지를 일관되게 적용해 모든 냉온수 공급기를 물가열기로 분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남는다.

결국 HS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수기나 냉온수기의 품목분류는 case-by-case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은 것은 관세청의 판단이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0306호vs.제0309호’ 새우분말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새우분말은 천연 조미료계의 치트키 같은 식재료다. 특유의 감칠맛과 시원한 풍미가 깊어서 생각보다 많은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

새우에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과 ‘글리신’이 풍부하다. 소금, 설탕 또는 인공 조미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새우 분말을 넣으면 나트륨 섭취는 줄이면서도 2% 부족한 맛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다.

새우분말은 갑각류의 가루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는 HS 4단위(제0309호)가 2022년 신설돼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새우를 건조시켜 분말화한 것으로 제0306.99-2000호로 신고했다.

2021년까지 새우를 건조해 분말화한 물품의 품목번호는 제0306.99-2000호였다. HS 2017에서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해당 수산물의 건조·염장(염수장 포함)·훈제한 제품의 세번(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에 통합해 분류했으나, HS 2022에서는 식용에 적합한 이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별도로 분류하는 제0309호를 신설했다.

● HS 2017 & HS 2022 제0306호 용어 변경사항 ●

HS 2017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략> ...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HS 2022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중략> ...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삭제>

관세율표 제0309호에서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0309.90-1000호에 ‘갑각류의 것’이 세분류된다.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을 분류한다(조리한 것인지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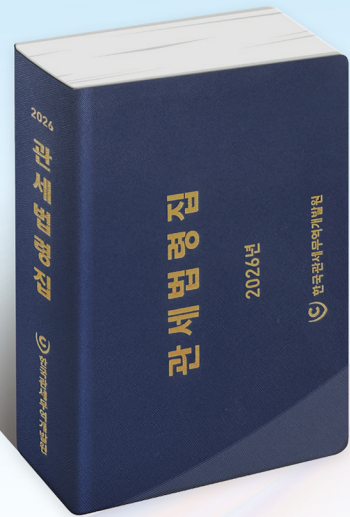
따라서 본 물품은 새우를 건조시켜 분말화한 것으로 제0309.90-1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Shrimp powder	0306.99-2000 (FAS1 0%)	Flours of crustaceans	0309.90-1000 (FAS1 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등 신규 수록
-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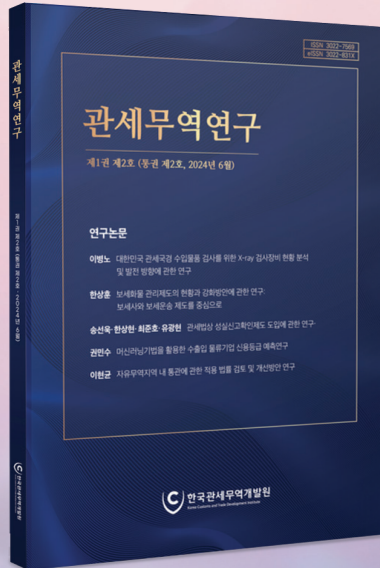


후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